#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박영순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1960

발의연월일: 2020. 7. 15.

발 의 자: 박영순·문진석·황운하

임호선 • 박성준 • 신정훈

김회재 • 유미향 • 조승래

이학영 의원(10인)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령은 이전공공기관의 지역 인재 채용을 의무화하고 매년 의무 채용 비율을 단계적으로 상향하여 2022년까지 신규채용인원 대비지역인재 채용인원 목표비율을 30%로 규정하고 있음.

이와 관련하여 연간 채용실적 통계를 살펴보면, 지난 해 전체 이전 공공기관의 지역인재 채용율은 25.9%로 2019년 목표(21%)를 초과 달 성하고 있어 지역균형발전과 수도권으로 인재유출을 방지하는 의미있 는 제도로서 정착해 나가고 있다고 평가됨.

다만, 지역인재 채용비율과 채용인원은 매년 증가추세임에도 불구하고 지역별로 지역인재 채용률의 편차가 크고, 여전히 지역에서 지역인재 채용 활성화에 대한 체감도가 낮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지역인재 의무 채용비율을 신규채용인원 대비 100분의 35 이상으로 상향하여 법률에 규정하고,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에 따라 조세

감면이나 보조금 지급 등의 혜택을 부여하며, 채용실적을 공공기관의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도록 함으로써 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을 제고할 수 있는 유인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2제1항 본문, 안 제29조 의2제7항부터 제9항까지 신설).

#### 법률 제 호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제1항 본문 중 "채용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를 "매년 신규채용인원 대비 100분의 35 이상의 비율로"로하고, 같은 조에 제7항부터 제9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⑦ 정부는 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하여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실적을 고려하여 조세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⑧ 정부는 이전공공기관등의 이전지역인재 채용실적을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에 반영하여야한다.
- ⑨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등의 채용 비율 및 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전공공기관등의 이전지역인재 채용에 관한 적용례) 제29조의2

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신규채용을 공고하는 경우부 터 적용한다.

#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	제29조의2(이전공공기관등의 지
역인재 채용 등) ① 이전공공	역인재 채용 등) ①
기관과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이하 "이전공	
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은	
해당 기관이 이전하거나 이전	
한 지역(이하 "이전지역"이라	
한다)에 소재하는 지방대학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수도권이 아닌	
지역에 있는 「고등교육법」	
제2조 각 호에 따른 학교를 말	
한다) 또는 고등학교(「초·중등	
교육법」 제2조제3호에 따른	
고등학교·고등기술학교를 말한	
다. 이하 같다)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을 이전공공기	
관등의 채용규모, 이전지역의	
학생 수 등을 고려하여 <u>채용</u>	<u>매년</u>
비율 및 기준 등 대통령령으로	신규채용인원 대비 100분의 35
정하는 바에 따라 채용하여야	이상의 비율로
한다. 다만, 이전지역에서 고등	

학교를 졸업한 후 다른 지역에서 「고등교육법」 제2조 각호에 따른 학교를 졸업하였거나 졸업예정인 사람은 해당 이전지역의 채용의무 대상에서제외한다.

② ~ ⑥ (생 략) <신 설>

<u><신 설></u>

<신 설>


- ② ~ ⑥ (현행과 같음)
- ① 정부는 이전공공기관등에 대하여 이전지역인재의 채용실 적을 고려하여 조세 관련 법령 이 정하는 바에 따라 조세를 감면하거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8 정부는 이전공공기관등의 이전지역인재 채용실적을 「공 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8조에 따른 경영실적 평가 에 반영하여야 한다.
- ⑨ 제1항에 따른 이전공공기관등의 채용 비율 및 기준 등에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정한다.